

	대학연구소 설치 · 운영 규정	제 정 일	2024. 1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특화산업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산학연협력 친화형 캠퍼스 구축으로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특화된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운영위원회) ① 대학연구소의 설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대학연구소 설치 승인

2. 대학연구소의 예산 수립, 본부 활동 결과 평가 및 환류
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조 (설립기준) 대학연구소는 다음의 설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본교와 관련되는 학문 분야

2. 기존의 대학연구소가 전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 분야

3.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육성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

4. 발기인 3인(전임교원 3인 이상) 이상으로 설립취지가 뚜렷한 분야

제 4조 (설립신청) 대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, 설립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설립승인) 총장은 설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.

제 6조 (운영세칙)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대학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접수번호	제20 - 호
------	---------

대학연구소 설립(폐지) 신청서

구 분	설립(), 폐지()			
연 구 소 명 칭			연구소의 소속학과	
연구소장	이름 :	소속 :	직위 :	
연 구 소 소 재	※ 연구소로 사용할 공간이 속한 건물명과 호수를 기재	연구소 면적(㎡)	전용공간 여 부	※ 연구소 용도로만 사용 경우 전용, 타 용도와 병용하는 경우는 그 실제내용을 기재
연구분야	※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분류표에 따라 세분류까지 기재			
설립목적 (폐지사유)	※ 구체적으로 기재			
참여인원 (명)	교수	연구조교		
	※본교 교원(비정년직 포함)			
첨부서류	① 운영계획서 ② 운영내규			

본인은 「대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위 연구소의 설립(폐지)을 신청하며, 관련 규정과 학교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울러, 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(폐지 신청시 삭제)합니다.

20 년 월 일 신고자 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

	결재	담당	과장	산학협력단장

※ 참여인원의 공란은 전임교수, 연구조교 외 연구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작성

※ 폐지일 경우 첨부서류는 필요없음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대학연구소 운영계획서

I. 연구소 설립 목적

※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기재

II. 연구소 운영

1. 연구소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

※ 연구소장, 참여교수(본교 교원), 기타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우수성

※ 연구소장, 참여교수(본교 교원), 연구 조교와 기타 연구인력 등 인적구성과 운영조직을 기재

2. 연구공간 및 연구장비 보유 현황

3. 중장기 연구목표 및 발전계획

※ 향후 3~6년간의 연구목표 및 연구소 발전계획

4. 연구소 성과목표

※ 1차년도~3차년도의 성과 목표치를 <붙임> 평가기준표상의 평가요소별로 작성

5. 협력기관 현황

※ 연구비 지원기관, 공동연구기관, 기타 협력기관명(담당부서 및 책임자 포함) 등을 필요시에 구체적으로 기재

번호	기관명	협력사항	담당부서 및 책임자	비고
1				

6. 기타